

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8. 2 (화) 평창군수(스포츠사업단)

나. 회부일자 : 2005. 9. 20(화)

다. 상정일자 : 2005. 9. 23(금), 제12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가. 2014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「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」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「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4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 요 골 자

가.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. (안 제2조)

나. 군수는 위원회의 설립·운영 및 2014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
다.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공유재산의 대부, 소속공무원의 파견,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)

라. 군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처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마.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. (부칙 제2항)

4. 검토 결과

- 가. 본 조례는 2014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2014평창동계 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있어 원활한 활동을 지원·육성하고자 평창군이 행·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나. 이 조례가 시행되면 2014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강원도의 "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"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속에 "2014평창동계올림픽" 유치활동이 보다 조직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다. 다만, 안 제3조 "출연금 등의 지원"에서 "2014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"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
- 물론 열악한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14동계올림픽위원회 활동 및 추진에 따른 지원을 하지는 않겠지만
 - 이로 인해 평창군내 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이질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어 예산지원범위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- 라. 기타 조례안의 자구, 띄어쓰기 등은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